

## 태아도 존중 받아야 할 소수자입니다!

강정아  
인턴기자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아마 지난 7월 방송된 초미숙아 관련 뉴스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작은 아기가 세계에서 26번째로 작은 아기로 기록된 사랑이 (본명: 이사랑, 여)는 올해 1월 말 체중 302g, 키 21.5cm로 엄마 뱃속에서 자란지 약 24주 만에 세상에 태어났다. 초미숙아 (400g 미만으로 태어나 생존한 미숙아)로 태어난 사랑이의 생존 확률은 불과 1%도 되지 않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6개월 만인 지난 7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된 것이다. 불과 손바닥 한 뼉 가량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아기의 생존본능과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린 부모님, 의료진의 노력은 그 자체로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이를 통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한 주제들이 화두이다. 사실 인간의 모든 활동, 즉 먹고, 살고, 일하는 것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낙태죄 존폐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2년 형법 270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지 6년 만에 다시 형법 269조의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비록 5명의 재판관 교체 전 마지막 선고 기일인 2018년 8월 말에 그 결과를 선고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있지만 낙태죄 찬반세력이 집회를 열어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의회에서 표결될 예정에 있다. (8월 9일에 아르헨티나 상원의회에서 법안이 부결됨) 따라서 일부 단체에서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낙태죄는 결코 쉽게 폐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세계적



흐름의 옳고 그름을 면밀히 따져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리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낙태죄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 고려해야 할 많은 논점들이 있지만 우선 이 글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양쪽의 주요 근거를 살펴보고, 낙태죄가 왜 유지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269조와 270조에서 낙태한 여성, 또는 산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고 낙태수술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수술한 사람이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 의료인이라면 더욱 무겁게 처벌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라서 산모나 그 배우자가 1)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혹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2) 강간,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 3)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4)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낙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임신 24주 이내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낙태죄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에 따르면 생명은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태아가 수정될 때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즉, 발달단계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 인간이 되

고 그 전에는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낙태는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낙태죄 유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가가 낙태죄 폐지가 아니라 피임교육을 강화하고 더 좋은 육아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낙태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유를 주장한다. 아이를 키울 경제적 형편과 가정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이를 낳는 것이 오히려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기 못지 않게 임신부의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 또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낙태시술을 받아야 하는 여성들의 생명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낙태죄를 임신부와 의사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며, 남성에게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낙태죄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의 대립이라는 구조로 본다면, 결국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인간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 다다를 수 밖에 없다. 태아가 생명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중단시키거나 없애버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발달이 덜 된 아주 작은 태아라도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 크기나 모체의 존성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 나는 태아를 그 시기에 상관없이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아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면,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노인들도 혼자 생존해 나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간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임신 24주까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호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약 24주만에 태어난 초미숙아의 생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정확하게 24주의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마치 사람의 청장년, 노인의 시기를 정확하게 선 긋기 어려운 것처럼 예를 들어 태아가 23주의 7일째까지는 인간이 아니었다가 24주 1일째부터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심장박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아기의 심장박동은 수정 후 18-22일 안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낙태허용 기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태아는 그

발달단계와 상관없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며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태아의 생명은 보호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낙태가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은 미혼모 문제, 입양 문제, 영아유기 치사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할 수 없는 가정에는 출산자체가 산모와 아이에게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들도 충분히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 보다 낙태죄를 유지함으로써 생명의 귀중함과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원치 않는 임신이나 경제적 형편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언젠든 임신부의 감정과 선택에 의해 태아의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안타깝지만 아이를 키우기에 완벽한 조건과 형편을 갖춘다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낙태를 합법화 한다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낙태를 합법화 함으로써 가져올 임신부들의 육체적, 심리적 치료문제, 여성의 자기결정권 강조에 따른 남성들의 책임감 감소 등은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때,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 혹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다. 낙태죄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무조건 법을 폐지하자는 입장보다는 소수자 중에도 가장 소수자이며, 가장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태아의 생명권이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낙태 시술의 이유,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마련, 피임과 생명에 대한 책임감 교육, 그리고 미혼모나 입양가족을 위한 인식개선과 제도 개선을 보완하여 양쪽의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을 대신할 로봇이 등장하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하여도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의 생명, 그 생명의 존귀함과 경이로움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나의 선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면, 나의 생명도 그와 동일하게 가벼운 것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낙태죄 존폐를 단순히 여성의 인권향상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보다 생명을 소중히 잉태하고 탄생하게 할 수 있는 방면으로 제도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부디 이 부족한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연약한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